

#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및 제1조 중 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을 “제1항에”로 하며

“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 ”을 “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회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각호의 어느하나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</u> 증인·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2조(비용) ① (생략)</p> <p>②<u>제1항의 규정에</u>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<u>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</u>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</p> <p>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 다음 <u>각호의 어느하나에</u>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호 ~ 3.호 (생략)</p>	<p>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</u> -----</p> <p>제2조(비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u>제1항에</u> ----- ----- <u>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회장</u>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-----</p> <p>제3조(비용지급의 예외)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호 ~ 3.호 (현행과 같음)</p>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1206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나. 제출자 : 권태호 의원 외 4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11. 23.(월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12. 8.(화)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권태호 의회운영위원장)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조문 용어 정비  
(제명, 안제1조 ~ 제3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#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